우정사업정보센터 공고 제 2022-13호

우정사업정보센터 일반임기제
우정 9급(조리)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우정사업정보센터에서는 일반임기제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2년 12월 19일
우정사업정보센터장

1. 선발내역 및 직무내용

채용분야	채용직급	임용예정기관 (소재지)	인원	주요업무
조리	**우정 9급 (일반임기제)**	우정사업 정보센터 (전남 나주시)	**1명**	**ㅇ 구내식당 조리 및 부대 업무** - 구내식당 조리 및 배식 업무 - 급식설비 및 기구의 위생·안전 실무 - 식자재 검수 등 구내식당 운영에 관한 부대 업무 **ㅇ 기관 내 업무분장에 의한 관련 업무 처리**

※ 임기는 임용일로부터 2년이며, 관련법령에 따라 근무 실적이 탁월할 경우 최초 임용기간을 포함하여 총 10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2. 근거 법령

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나.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다.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 규정

3. 응시자격 요건

가. 공통요건(판단기준일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무원 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응시연령 : 18세 이상(2005. 12. 31. 이전 출생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복수국적자는 임용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

나. 응시자격 요건(판단기준일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채용분야	채용직급	응시자격 요건
조리	우정 9급 (일반임기제)	**o 아래 요건 중 하나 충족** **- 조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 조리기능사 자격증 소지 후 관련분야* 2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에서 직접 조리업무에 종사한 경력(단, 전력조회 시 확인이 불가한 경력은 불인정)

< 응시자격 요건 기본사항 >

o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2023.2.1.)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실제 최종(면접)시험 일정은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시 안내 예정

o '경력'은 응시자격 요건에 제시된 관련분야의 경력을 의미

- 개인사업자(사업주)나 개인사업자에 소속된 직원의 경력은 불인정
- 임용예정 직위 주요업무와 관련된 경력으로서 경력(재직)증명서가 제출되고 담당업무, 근무기간, 주당 근무시간(예_주00시간·직급(직위) 등이 정확히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 될 수 있음
- 경력기간은 주당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하며, 시간제 근무 경력인 경우에는 기준에 비례하여 산출한 경력을 인정
- 기관의 폐업으로 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 관련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서류(예-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로 보완하여야 하며 보완서류 중 '폐업사실증명서', '4대보험 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 '소득금액증명서'는 필수제출
- 경력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그 중 유리한 경력 하나에 대해서만 인정

다. 우대 요건(판단기준일 : 원서접수 마감일)

채용분야	우대 요건	
조리	경력	**o 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충족한 이후의 관련분야* 근무경력** * 관련분야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에서 직접 조리업무에 종사한 경력(단, 전력조회 시 확인이 불가한 사업장 경력은 불인정) ※ 근무기간별 차등 배점
	자격증	**o 응시요건으로 제출한 자격증 이외 관련분야에 해당하는 자격증** - 조리기능장 - 한식조리산업기사, 중식조리산업기사, 양식조리산업기사, 일식조리산업기사, 복어조리산업기사 - 한식조리기능사, 중식조리기능사, 양식조리기능사, 일식조리기능사, 복어조리기능사 ※ 자격등급별 차등 배점

< 우대요건 기본사항 >

○ 우대요건은 적극적 서류전형에서만 적용되며, 이력서에 기재 및 우대요건 판단기준일(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제출 건에 한하여 인정

○ '경력'은 응시자격요건 충족 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근무한 경력만 인정하며, 근무기간별 차등 배점 부여

- 개인사업자(사업주)나 개인사업자에 소속된 직원의 경력은 불인정
- 임용예정 직위 주요업무와 관련된 경력으로서 경력(재직)증명서가 제출되고 담당업무, 근무기간, 주당 근무시간(예_주00시간·직급(직위) 등이 정확히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 될 수 있음
- 경력기간은 주당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하며, 시간제 근무 경력인 경우에는 기준에 비례하여 산출한 경력을 인정
- 기관의 폐업으로 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 관련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서류(예-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로 보완하여야 하며 보완서류 중 '폐업사실증명서', '4대보험 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 '소득금액증명서'는 필수제출

○ '자격증'은 응시자격요건으로 제출한 자격증을 제외한 직무관련 자격증에 대해 자격등급별 차등 배점 부여 후 합산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4. 보수 관련 사항

가.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라 임용직급의 보수 및 수당 지급

○ 연봉한계액 범위 내에서 연봉액을 정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

(단위: 천원)

연봉등급	적용대상	상한액	하한액
9호	9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43,694	-

나.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고용보험 임의가입 가능

○ 최초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입신청 가능, 동기간이 지나면 가입 불가

5. 시험방법

가. 서류전형(1차)

○ 임용예정 직위별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를 초과할 경우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를 합격자로 결정

[서류전형기준]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직무분야(경력)와 담당예정 업무와의 연관성, 우대요건(경력, 자격증)

나. 면접시험(2차)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의 적격성을 종합 평가

[평정요소]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하며,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란 "중", "하" 의 개수와는 상관없이 "상" 의 개수가 많은 자 순으로 하며, "상" 의 개수가 동순위일 때에는 "중" 의 개수가 많은 자 순으로 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제2항 및 「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6. 시험일정

시험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22. 12. 19.(월) ~ 12. 29.(목)	'22. 12. 26.(월) ~ 12. 29.(목)	'23. 1. 18.(수)	'23. 2. 1.(수)	'23. 2. 10.(금)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는 우정사업정보센터 홈페이지(http://kpic.koreapost.go.kr)에 공고하고, **면접시험 일시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지
* 상기일정은 응시인원 등의 사정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가능

7. 응시서류 접수

가.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2. 12. 26.(월) ~ 2022. 12. 29.(목), 4일간**

○ **접수처 : 우정사업정보센터 정보기반과 운영지원팀 채용담당**
(우 58323, 전라남도 나주시 정보화길 1, 우정사업정보센터 3층)

○ **접수방법 : 등기우편만 가능(반드시 익일특급 등기우편 접수)**

- 접수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하며 방문, 택배 및 퀵서비스 등을 통한 접수는 하지 않음
- 봉투 겉표지에 “우정사업정보센터 경력경쟁채용 응시원서 재중” 문구 표기
- 응시표는 회송하지 않으며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당일 교부 예정
- 응시번호는 ’23. 1. 3.(화)에 개별 문자통보 예정, 통보받지 못한 경우 반드시 확인

* 응시번호 미확인 등에 따른 불이익 및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음

나. 유의사항

○ 응시자는 자격요건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단,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반환(확정된 채용 대상자는 제외))

○ 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

○ 제출된 증빙서류(경력, 자격증 등)는 관계기관에 진위를 확인할 예정이며, 허위사실 기재 또는 위·변조 시「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 임용시험령」에 의거 5년간 국가공무원 시험 응시자격이 정지

8. 제출서류

가.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붙임 2) 1부

나. 응시원서(붙임 3) 1부

* **응시수수료 : 5천원 상당** 정부수입인지 부착
* 저소득층 해당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 면제 (반드시 증빙서류 제출)

다. 이력서(붙임 4) 1부

라. 자기소개서(붙임 5) 1부

마. 직무수행계획서(붙임 6) 1부

바.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 1부

* 최근 6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 제출

사. 관련 직무와의 연관성(경력) 확인서(붙임 7) 1부

아. 경력(재직)증명서(붙임 8) 1부

* 경력(재직)증명서에 직무분야와 관련된 경력이 미기재 또는 모호할 경우, 발급부서 확인(서명) 또는 **직무분야와 관련 경력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인사기록카드 등) 첨부**

자. 학위 증명서 또는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사본(해당자 한) 각 1부

* 전형위원 제척·기피 등에 활용되며, 학교명은 전형위원에게 제공하지 않음

차. 자격증 등 증빙자료 사본 1부

카.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붙임 9) 1부

타.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붙임 10) 1부

< 서류전형 합격자 중 경력(우대요건 포함) 있는 경우 제출서류>

① 해당 경력기간 4대 보험(고용보험 등) 중 1개 보험의 자격 득실 내역 1부
* 고용보험(피보험자격 내역서), 국민연금(가입이력 포함된 가입증명서)
건강보험(가입자 자격득실확인서), 산재보험(근로자 고용정보확인서)

② 해당 경력기간 국세청이 발급한 소득금액 증명 1부

9. 유의사항

가.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 합격자 통지 후라도 채용신체검사, 학위 및 경력 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마.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임용되지 못하거나, 최종합격자가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바. 자격증, 경력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사.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위, 경력증명서)는 반드시 국문번역본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아. 이력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재착오, 누락,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자.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응시자가 없는 경우를 포함)에는 원서 접수일,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할 수 있으며, 공고한 내용을 변경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에는 최초공고매체에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변경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차. 기타 본 시험계획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처리할 예정입니다.

카. 시험장소, 시험일시 및 최종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우정사업정보센터 정보기반과 운영지원팀 채용담당 (☎ 061-338-2091)

타.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붙임 1>

직무기술서

임용예정기관	채용분야	임용예정직급	선발예정인원
우정사업정보센터	**조리**	**일반임기제 우정 9급**	1명

주요 업무	○ **구내식당 조리 및 부대 업무** - 구내식당 조리 및 배식 업무 - 급식설비 및 기구의 위생·안전 실무 - 식자재 검수 등 구내식당 운영에 관한 부대 업무 ○ **기관 내 업무분장에 의한 관련 업무 처리**

필요 역량	○ **(공통 역량)** 윤리의식, 공직의식, 고객지향마인드 ○ **(직급별 역량)** 과업이해력, 치밀성, 협조성, 조직헌신 ○ **(직렬별 역량)** 기술적 전문지식, 문제해결력

필요 지식	○ 급식 조리업무에 대한 지식 및 실무능력 ○ 구매 식재료의 보존·보관에 관한 지식 ○ 식중독 등 식품 안전관리, 현장에 대한 안전의식 및 지식 등

응시자격요건	자격증 및 경력	○ **아래의 요건 중 하나 충족** - 조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 조리기능사 자격증 소지 후 관련분야* 2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에서 직접 조리업무에 종사한 경력(단, 전력조회 시 확인이 불가한 사업장(폐업 등) 경력은 불인정)
우대요건	경력	○ **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충족한 이후의 관련분야* 근무경력** * 관련분야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에서 직접 조리업무에 종사한 경력(단, 전력조회 시 확인이 불가한 사업장(폐업 등) 경력은 불인정) ※ 근무기간별 차등 배점
	자격증	○ **응시요건으로 제출한 자격증 이외 직무관련 자격증 소지자** - 조리기능장 - 한식조리산업기사, 중식조리산업기사, 양식조리산업기사, 일식조리산업기사, 복어조리산업기사 - 한식조리기능사, 중식조리기능사, 양식조리기능사, 일식조리기능사, 복어조리기능사 ※ 자격등급별 차등 배점